

보도 일시	2022. 2. 9.(수) 10:00 (당일 석간 가능)	배포일시	2022. 2. 8.(화) 16:30
담당 부서	항만국	책임자	과장 김규섭 (044-200-5980)
	항만연안재생과	담당자	사무관 음현규 (044-200-5978)

인천원도심 활력제고를 위해 힘을 모은다

- 해수부, 인천시 · 인천항만공사와 내항재개발 기본업무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9일(수) 10시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침체된 인천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인천 원도심을 수도권 해양관광·문화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항 내항 1·8부두를 재개발해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8월 사업계획서 제안 평가를 거쳐 인천항만공사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우선협상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기본업무협약은 내항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각 기관의 지원 및 협력 사항을 명문화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하였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기본업무협약에서는 항만 재개발의 효과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주변시설을 고려한 개방성 확보 등을 재개발사업 기본방향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사업추진 차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시계획과 관련된 인천광역시의 지원 사항도 명문화하였다. 아울러 2023년 7월 재개발사업 예정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수산부 주관의 실무 협의제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협약기관은 영상 협약식 이후에 메타버스 플랫폼(제페토)을 활용해 가상현실에서의 협약체결식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인천광역시 시장, 그리고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아바타로 참석해 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마련된 메타버스 공간에 재개발사업이 완공된 인천 내항 1·8부두 미래 모습을 담아 앞으로 변화될 인천 내항 1·8부두를 누구나가 즐길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라며,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한 협약체결 기관은 재개발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본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인천 중구 원도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최고의 해양문화 도심공간 조성

□ 사업 개요

- (사업구역)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내 인천내항 1·8부두 일원
- (면적/기간) 429천㎡ / '23년~'28년
- (총사업비) 5,563억원
- (주요시설) 호텔, 복합행정타운, 수변데크, 광장, 주차장, 공원 등

□ 추진 현황

- '18.12 : 인천 내항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해수부, 인천시, LH, IPA)
- '20. 9 : 사업계획(안) 제안(IPA→해수부)
- '21. 3 ~ '21. 8 : 제3자 제안공모(IPA 단독)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8.6)
- '21. 9 ~ : 실시협상 추진중*

* 현재까지 본협상 1회, 실무협상 4회 완료

□ 추진 계획

- '22. 2 : 실시협약 체결 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조감도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

기 본 업 무 협 약 서(안)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이하 “공동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협약기관간의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공동협약기관은 다음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 ① 인천 원도심의 활력제고와 해양관광·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항 내항 1·8부두를 배후지역과 연계하여 수도권 해양관광·문화거점이자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개발한다.
- ② 누구나 쉽게 바다를 즐기고 조망할 수 있도록 녹지 등 충분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주변시설을 고려하여 경관성 및 개방성을 확보한다.
- ③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개발이익은 최대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업무분담) 공동협약기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업무를 분담한다.

① 해양수산부의 업무

1. 인천항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총괄
2. 인허가 등에 관한 행정지원 및 감독·승인
3. 재정지원 대상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확보·지원
4.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 수렴·반영 등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② 인천광역시의 업무

1. 사업계획·실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 관련 지원
2.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부담이 필요한 경우 적기 지원
3. 사업 시행과 관련한 민원대응 지원 및 지역의견수렴 지원
4. 그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 지원

③ 인천항만공사의 업무

1. 사업계획(안) 마련, 실시계획 수립 및 부지조성 등 사업 시행
2. 사업기간 중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3. 사업시행과 관련한 민원대응 및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
4.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항만운영계획 수립

제4조(우선개방) ① 공동협약기관은 부두운영계약이 종료되는 2023년 7월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예정지를 우선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면적 조정, 업무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협약기관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운영하되, 공동협약기관은 실무 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5조(보안유지) 공동협약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동협약기관 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협약서의 개정 또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우호적으로 처리한다.

제7조(협약의 준수) 공동협약기관은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2월 9일



해양수산부

장관 문 성 혁



인천광역시

시장 박 남 춘



인천항만공사

사장 최 준 욱

참고 3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협약식 체결 계획

□ 개 요

- 누구나 내항 재개발 공간에서 미리 거닐고, 느낄 수 있도록 내항 1·8부두 재개발 완공시 모습을 미리 구축*하여 제페토 월드로 공개·활용

* 금번 행사를 위해 구상수준으로 자체 제작하였으나, 향후 홍보 등을 위해 추가 보완·제작 검토

